

2021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사전안내

2021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일정 등 사전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2. 18.

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

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<2021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(안)> 및 <2021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>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「2021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」은 [2021년 2월경\(예정\)에](#)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(<https://local.gosi.go.kr>), 강원도 홈페이지(<http://www.provin.gangwon.k>)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.

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, 수험생 여러분은 반드시 각 시험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2021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(안)

시 험 명	원서접수	시험일정		
		필기시험 (1차·2차 병합)	면접시험 (3차)	최종합격자 발 표
8·9급 공개경쟁임용시험	3월말	6.5.(토)	7월	8월
7급 공개경쟁임용시험, 연구직·지도직·9급(기술계고 졸업 포함) 등 경력경쟁임용시험	7월초	10.16.(토)	11월	12월

※ 선발예정 직렬(직류) 및 인원은 미정, 해당 시험공고문 확인('21년 2월 중 공고 예정)

2. 2021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사전 안내

-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**중복 접수 불가**
 - 응시하고자 하는 1개 지방자치단체의 임용시험에만 접수 가능
-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**공통적용 가산점 폐지**
-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**과목 대체** ※ 세부 내용 : 참고1, 2
 - 영어 과목 : '영어능력 검정시험'으로 대체(토익, 토플, 텀스, 지텔프, 플렉스)
 - 한국사 과목 : '한국사능력 검정시험'으로 대체(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시험)
 - ※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5년으로 연장(공무원임용시험령 준용)
- 환경연구사 시험과목 변경

현 재	변경(2021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)
(필수) 환경공학, 환경화학, (선택) 대기오염관리	(필수) 환경공학, 환경화학, (선택) 생태학

3. 2022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

-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의 시험과목 개편(선택과목 및 조정점수 제도 폐지)
 -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·과학·수학과목 제외
 - 일반행정 또는 속기직류를 제외한 타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 개론 제외

4.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

- 2023년부터 기술계 고졸(예정)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변경

현 재	변경(2023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)
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	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(단,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)

○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
구 분	TOEFL(PBT)		TOEIC	TEPS		지텔프 (G-TELP)	플렉스 (FLEX)
	PBT	IBT		'18.5.12. 이전시험	'18.5.12. 이후시험		
일 반	530	71	700	625	340	65(Level 2)	625
청각장애	352	-	350	375	204	-	375

-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

*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토익, 텡스, 지텔프, 토플)의 경우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에서 정하는 인정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함 (단, 플렉스는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등록 불요)

〈사전등록 대상시험〉

- 토익, 텡스, 지텔프 :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
- 토플 :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~10일 등록

※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,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

※ 사전등록일 기준으로 각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성적만 등록가능

○ 유의사항

- 해당 검정기관에서 실시한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 인정하며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·졸업 등 특정목적으로 실시한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

- 청각장애인에 대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안내 : 별첨(다음 페이지 참조)

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 범위 안내

1.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

-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
- 1) '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 인 사람
- 2) '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 어음(말소리) 분별력 50% 이하' 인 사람

※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

- ☞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(舊2·3급으로,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)
- ☞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
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〉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

2. 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

- 7급 영어 기준점수

시험명	TOEFL(PBT)	TOEIC	TEPS		FLEX
			'18.5.12. 이전시험	'18.5.12. 이후시험	
7급 공채(청각장애)	352	350	375	204	375

3. 제출서류 등 안내

- ① (제출서류) 의사진단서 원본(의사 소견서 불인정)

*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

- ② (발급기관)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시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

③ (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)

- (가)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①
- (나)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②
 - *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7호)에 따라 검사
- (다)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③

<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상기인은

-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(말소리)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,
- ②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, 어음(말소리)분별력이 30%인 사람으로서
-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

4.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
- ① (신청제출 : 응시자 → 강원도)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,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**진단서 원본**을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(등기)로 제출
- ※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(舊2·3급)으로 등록된 **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**

* 예 : ☒ (체크)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

※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② (대상 확인 : 강원도 → 응시자)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,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완 요청 등 추가 안내 예정
- ③ (인정기간)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**해당 시험에 한함**
-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(신청)하되,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제출 불필요

5. 유의사항 등 안내

-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,
- 의사 진단서 등을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**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.**

참고 2 [7급 공채]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(2021년부터)

○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(등급)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**2급 이상**

○ 인정범위

- **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**
-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, 정부기관 · 민간회사 · 학교 등에서 승진 · 연수 · 입사 · 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· 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

○ 성적등록 및 확인방법

- 인터넷 **응시원서 접수 시**, 인증번호 · 시험일자, 인증등급 등을 응사자가 입력
※ 필요 시, 시험성적 진위여부를 위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
-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**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**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**사전등록 필요 없음**